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일시 : 2020년 7월 23일(목) 14시

● 장소 : 숲과 나눔 강당

주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진행순서

인사 및 소개하기(14:00~14:10)

발제 (14:10~15:10)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알권리는 살권리다 :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토론 (15:20~16:20)

토론1.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토론2. 피아(‘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활동가)

토론3. 김태완(산업안전보건공단)

토론4. 이순환(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전체 토론(16:20~17:00)

발제 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매체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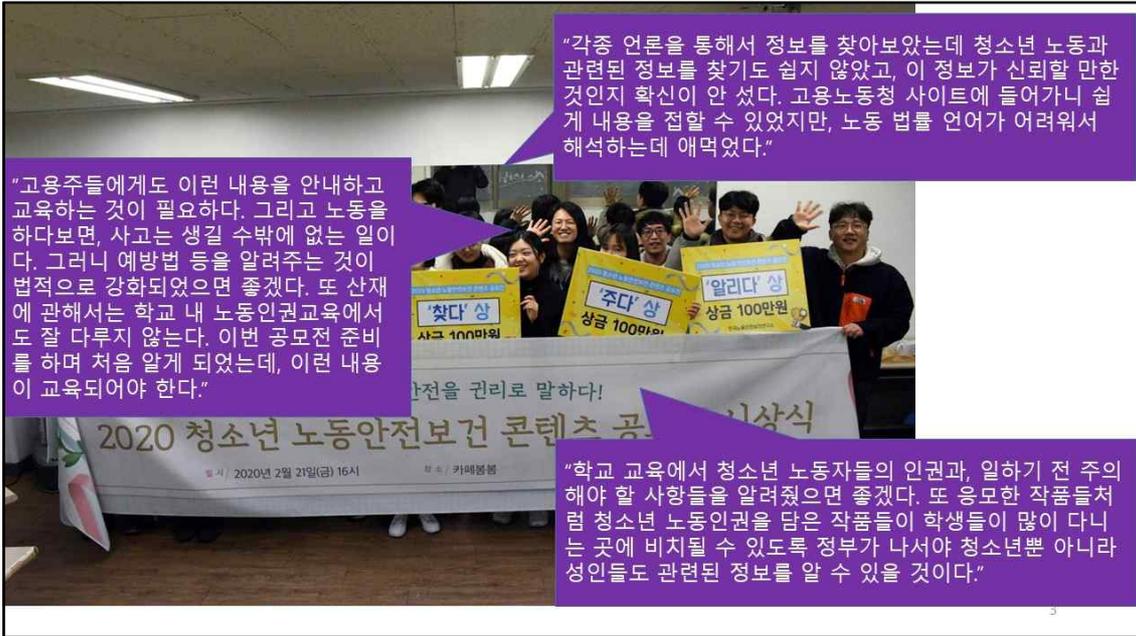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1

연구팀 및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개

- **연구팀 소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 노동건강권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성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개**
 - 서울, 수원, 부산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실천하는 노동안전보건 단체임.
 - 주요 활동으로 노동시간센터, 청소년 노동건강권팀, 산안법-산재법연구모임,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매체 발간 등 활동 중임.
 - 홈페이지 주소 : www.kilsh.or.k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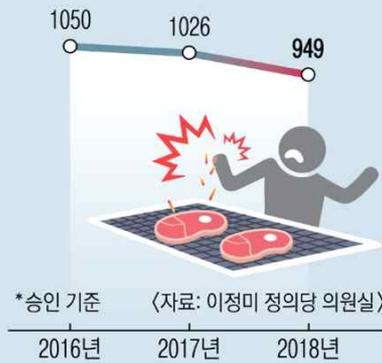
청소년 안전보건 플랫폼 연구 배경

- 직업계고 현장실습과정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 직업계고 실습실 작업환경 개선(2016년부터)
- 청소년 노동자의 산재 문제+한국사회의 노년층
- 업무용 오토바이 사고 발생 응급실 환자 중 15.2%
본부 2011~2016년 자료

< 노동부 산재통계자료 >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총 계	102,305	2,142	89,848	1,957	90,656
18세 미만	41	2	61	0	79
18~24세	4,013	31	3,593	15	3,669

19세 미만 업무중 사고 산재 추이 (단위: 건)



한국사회의 청소년 노동 현실

"호텔 연...
쉬면서 완..."

"패스트푸드...
입에 쑤서..."

청소년 감...
'구멍노동...
경험' 등 5...

십대 밀바닥 노동
아/너로 불리는 이들의
수상한 노동 세계

청소년노동안전연구소 기획
이수영
윤지영
배정혜
원미
김영호
권태영 글

**"5명미만 사업장은
12월 46일까지 일해야 한다"**

조직문화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 제한없이 하루 24시간, 365일을 일해야해
연차휴가는 꿈도 꿀 수 없는걸 가족으로 애고해도 괜찮아

5

청소년 안전보건 플랫폼 연구 내용

- 국내외 청소년 노동기본권 현황 연구보고서 검토
- 국내 안전보건 매체 및 청소년 관련 매체 분석
- 해외 각국의 청소년 안전보건 매체 분석 및 검토
- 국내 안전보건영역에서 청소년 안전보건 플랫폼 제언
- 청소년활동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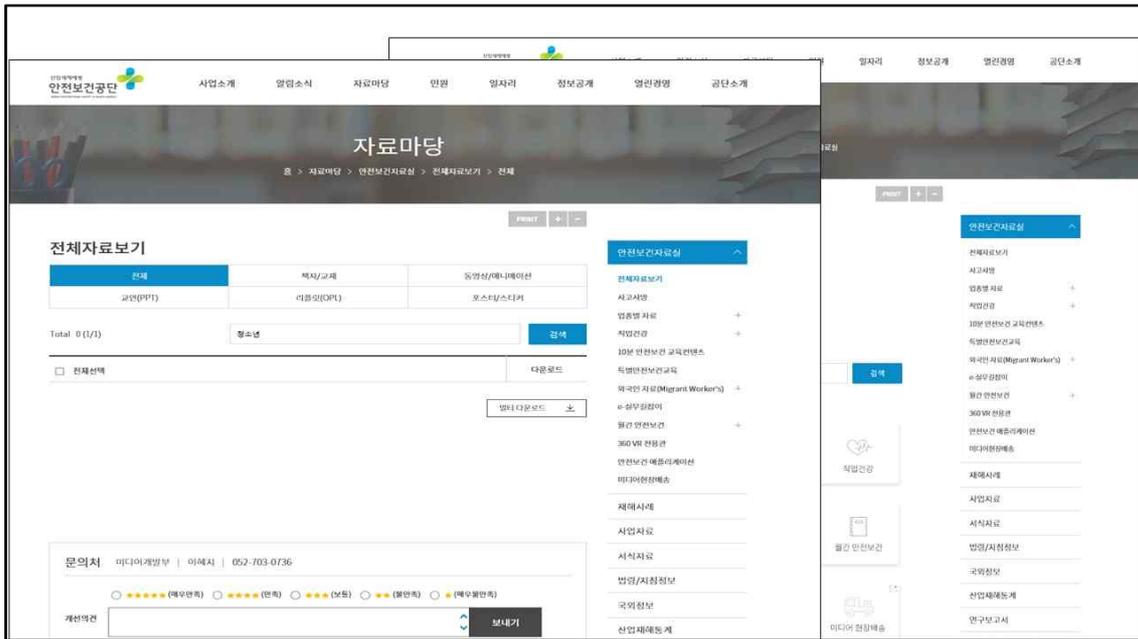
'청소년 노동'에 대한 관점 및 접근방법

- 청소년 노동기본권의 개념 : '일하는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접근
 - 한국 사회 '청소년노동'의 실태
 - 15시간 미만의 초 단기 노동,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으로 심화 확대
 - '티슈노동자, 밀바닥 노동'이라며 청소년 노동을 지칭함.
 -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
 - 여러 관련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세부 내용 인지 어려움
 - 보호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법률규정으로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법률 규정 미흡
 - 탈학교, 탈가정 청소년에 관한 법령적용 한계
- ➔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에서 발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국내 안전보건 매체 및 청소년 관련 매체 분석

8



국내 청소년 관련 매체 검토

- 특성화고 및 직업계고 교사, 노동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The screenshot shows the HIFIVE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HOME, 학교찾기, 학교통계, 커뮤니티, and 주요 서비스. Below this is a search bar and a main menu with categories like 학교정보, 교육지원, 취업·진로, 후학습, 정보센터, HIFIVE 소개, and 부가서비스.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banner for '교육 자료실' (Education Resource Room) with a sub-banner for '안전한 현장실습' (Safe On-site Internship). Below the banner is a table listing various educational materials.

NO	발매처	제목	자료	등록인	등록일	조회
49	교육부	[한국공인노무사회] 2019년 현장실습 지원점검 매뉴얼, 체크리스트	PDF	운영자	2019-08-27	332
48	교육부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수정본) (Q&A포함)	PDF	운영자	2019-07-05	1580
47	교육부	[한국공인노무사회] 2019년 현장실습 리플렛 (학생/기업용)	PDF	운영자	2019-06-13	1538
46	교육부	[매뉴얼] HIFIVE 사용자 매뉴얼(학교용)	PDF	운영자	2019-05-09	412
45	교육부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no1)	PDF	운영자	2019-04-10	585

국내 청소년 관련 매체 검토

- 경기도노무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 교육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
- '꼭 알리자' 알바관련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Youth Labor Rights Cente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text '근로기준법 노점 알람말랑한 근로기준법 알고 싶다면?' and '알람말랑' logo. Below the banner is a '커뮤니티' (Community) section with a table of recent posts. To the right, there are statistics for '알바문제 상담하기' (Part-time job problem consultation) and '센터 지원 현황' (Center support status).

일	유저사항	보도자료	자료실
2019.06.08	[파이낸셜뉴스] '가게 힘들...		2019.06.14
	[트론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분...		2019.05.16
	[상당 계한 안내] 대체휴일(5월 6일) 상...		2019.05.02
	[상당 계한 안내] 근로자의 날(5월 1일)...		2019.04.29

해외 각국의 청소년 안전보건 매체 분석 및 검토

국가	매체	주소
캐나다	CCOHS 'Young Workers Zone'	https://www.ccohs.ca/youngworkers/
미국	OSHA 'Young Workers, you have rights!'	https://www.osha.gov/youngworkers/
캘리포니아	California Partnership for Young Worker Health and Safety.	http://youngworkers.org/rights/teenworkers/
EU	OSHA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	https://osha.europa.eu/en/themes/young-workers
영국	HSE 'Young workers at work'	http://www.hse.gov.uk/youngpeople/index.htm
핀란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https://www.tyosuojelu.fi/web/en

13

결과 – 공통점과 한계

- **정보제공** :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제공
- **관점** :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산업재해의 원인은 작업장, 사업주에게 있음을 강조, 다양한 노동자를 고려한 정보 제공
- **접근성** : 구체적인 정보 전달, 쉬운 언어나 다양한 콘텐츠 제공
- **다양성** : 업종별 다양한 위험유해요인, 당사자에 맞는 정보, 프로그램 제공
- **알권리의 중요성** : 교육이나 알권리 필요성 강조,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 중요성 강조
- **한계**
 - 쌍방향의 소통의 공간으로서 플랫폼 구축 필요
 - 변화되는 노동현실, 사회에 맞는 내용으로 확장 필요
 - 실제 적용과정에서의 한계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 궁금함,

14

캐나다(CCOHS 'Young Workers Zone')

홈페이지 메인 화면



Young and New Workers 페이지



캐나다(CCOHS 'Young Workers Zone')

- (1) **Stand Up 2 Bullying** : 괴롭힘의 정확한 의미, 구체적 사례, 대처방법, 사이버 괴롭힘
- (2) **What Laws Apply to You?** :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 정부, 고용주, 노동자 각각의 책임과 역할
- (3) **Helping Hands – Volunteering?** : 청소년 자원봉사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 필요 정보 제공
- (4) **Be PreparedBe Prepared** : 일 시작 전 알아야 할 기본권(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작업 거부 권리) 설명, 필요 정보 제공
- (5) **Young Workers...It's Your Responsibility** : 일 시작 전 확인해야할 부분 강조, 구체적인 팁(tip)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
- (6) **Details, Details** : 각 주(state)별로 취업가능 직장-근무시간, 임금, 특별 수당, 휴가 등-정보제공
- (7) **Spread the Word** : 작업장 건강과 안전의 내용에 대한 정보(책/포스터/Fact sheets/오디오 및 비디오 등)제공
- (8) **Looking for More?** : 작업장 건강과 안전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단체 링크

캐나다(CCOHS 'Young Workers Zone')

(9) **Digging Deeper** : 작업장 재해 통계를 거부권 행사 방법, 권리를 위한 노동자

(10) **Now What?** : 작업장의 문제 발생 시 부에 대한 순서도(flow chart), 작업 거부

(11) **Rules to Work By** : 안전보건에 관

(12) **Initiatives & Programs** : 고용주에

(13) **Job Search** : 일을 구하는 청소년

(14) **Tips for Young Workers** : 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에 대한 내용 제공

(15) **Employee Rights** : 3가지 권리(알

(16) **Job Hazards** : 직종별 구체적인 업

비정소년과 청소년 모두를 포함한 노동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질문하라.

- 내 직업의 위험요소는 무엇인가요?
- 내가 알아야 할 위험(소음, 인체 공학, 화학, 방사선 등)이 있습니까?
- 직업안전교육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언제 받습니까?
- 위급한 상황에서의 절차(화재, 화학 물질 유출)에 대한 교육을 언제 받습니까?
- 소화기, 구급상자 및 기타 응급 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 내가 알아야 할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 안전에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 보건안전위원회(HSC)는 누구이며 언제 만납니까?
- 다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급처치자는 누구입니까?

손상과 사고는 아래와 같은 근본원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 안전하지 못한 근무 조건/ - 감독의 부재/ - 교육의 부족
- 부적절한 장비/ -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홀

캐나다(CCOHS 'Young Workers Zone')

• 의미와 한계

- 일터 괴롭힘을 첫 번째로 제시, 피해자 중심주의
- 일터에 대한 정보, 유해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안전권 이해 및 링크 정보 제공
-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반영 필요
- 청소년을 위한 업종 혹은 직종별 체크리스트 제작 필요
- 독자적인 운영을 통한 청소년 접근성 높이기

미국_OSHA 'Young Workers, you have rights!'



미국_OSHA 'Young Workers, you have rights!'

1. Young Workers - You have rights!

: 안전한 직업의 권리 및 사업주의 책임 그리고 OSHA의 역할에 대한 간단한 설명

2. What's New [Highlights] - I have rights" poster for workers age 16-24.

: 노동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홈페이지로 연결됨

: 16-24세 청소년의 법적 권리, 임금, 노동보건, 국제 아동노동 관련 내용

3. YouTube – OSHA : Young Workers' Rights

: YouTube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노동에서 권리가 있음을 알림

4. Young workers

: 안전한 노동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 정리

- 아동노동법에 의한 연방 및 주 정부의 임금 및 시간
- 노동자의 권리, 사업주 책임,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

미국_OSHA 'Young Workers, you have rights!'

5. employers

: 젊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 연방 및 주 아동 노동법 이해 및 준수, 청년 노

6. Parents and Educators

: 취업 하는 자녀와 학생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 부모는 자녀의 취업 결정에 적극 참여 할
- 교사는 젊은 노동자에게 직장에서의 권리

7. Real Stories : 젊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부상

8. Hazards

: 젊은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 또는 건강악화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정리함
: 주로 취직하는 패스트푸드 및 건설업의 공정 및 유해물질별로 건강장애와 예방대책 제시

9. Resources : 연방정부, 주정부 등에 있는 젊은 노동자의 노동권 및 노동보전 정보를 연결

1. 부모

=> 자녀의 취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일하고 있는 곳과 그들이 하는 일을 파악하십시오.

- **질문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직장에서 한 일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육 및 감독에 대해 자주 질문하십시오. 문제점을 토론하십시오.

- **위험을 보고하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OSHA에 위험을 보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문제의 징조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청년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직업입니까? 학교에서 자녀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관한 관심이나 에너지의 상실이 너무 많은 일의 요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다른 표시는 증가한 스트레스 수준, 불안, 피로 및 우울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1

미국_OSHA 'Young Workers, you have rights!'

• 의미와 한계

- 청소년 노동에 관한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충실히 제공
- 청소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공정(건설업,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과 관리대책 설명
- 노동안전보건 뿐만 아니라 임금 및 고용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사업주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사례 제시
- 실제사례에서 보건에 관한 내용 부족
- 청소년 참여 및 시민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참여 부족

22

캘리포니아 주 (California Partnership for Young Worker Health and Safety)

홈페이지 메인화면



youngworkers.org 메인화면



캘리포니아 주 (California Partnership for Young Worker Health and Safety)

1. 권리와 책임들 :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일터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함
2. 노조의 의미와 필요성 : 청소년과 노조 그리고 노조 가입하기
3. 일터에서 다치는 청소년 : 안전하지 않은 장비 혹은 스트레스적인 조건들에 의한 사고
4. 통계 및 사례 : 청소년노동자 규모, 사업장 종류, 사고 및 사망 통계, 사고 장소 및 상황 사례
5. 위험 : 위험의 정의 및 종류, 위험의 발생 이유와 예방, 산업별 위험 사례
6. 일하다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는 지 : 업무 중 사고시 자신의 권리와 보상,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산재보험의 개념 및 심화
7. FAQ : 청소년 총 노동시간, 최저임금, 사업주에게 요구할 것(유니폼, 도구, 장비 등), 16세 이하의 일자리 제한 등

캘리포니아 주 (California Partnership for Young Worker Health and Safety)

8. 필요한 자료,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제공

: 역할(청소년, 부모, 사업주 등) 및 산업별(차량 정비, 농사, 식당, 건설, 호텔 청소, 판매) 자료, 성희롱 자료

9. 교사, 청소년고용프로그램,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료 : 각종 커리큘럼, PPT자료 등

10. 부모를 위한 자료 : 위험 신호 파악 필요 - 지루해하거나 해부학적인 양의 흥미를 잃은 일하는 청년

11. 사업주를 위한 자료 : 청소년 건강과 안전에
년 안전 및 건강 관련 자료

12. 의료인을 위한 자료 : 청소년 환자에게 해야 할

- 일의 종류, 절단 도구 사용 유무, 중량물 취급 등

-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당신의 청소년 노동자 및 환자에게 물어봐야 할 내용>

- 당신은 지금 직업이 있으며,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당신은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까?

: 뜨거운 액체를 다루는 지 / 절삭 공구 사용 / 무거운 물건 들기/ 찢거나 미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지/ 전원 공급 방식으로 작업하는 지/ 화학 약품 사용

- 안전 또는 건강 및 직장에서의 위험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 매일 또는 매주 어느 정도 일합니까?, 밤에 얼마나 늦게, 아침 일찍 일합니까?, 당신은 학교 수업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 당신은 일에 대해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당신이 관심있는 무엇인가를 질문하거나 말하기가 가능합니까? / 질문을 받았습니까?

- 당신은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증상이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주 (California Partnership for Young Worker Health and Saf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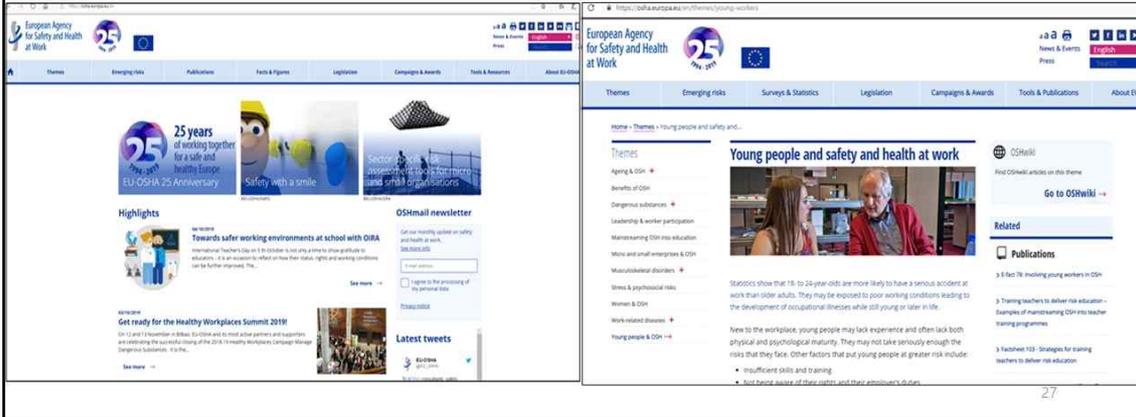
• 의미와 한계

- 대상별 필요한 안내서, 자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기관 등이 분류되어 있음.
- 필요한 자료가 한 곳에 문서로 업로드 되어있고 다운 받을 수 있음.
- 팩트시트마다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음.
- 최근 주요 이슈-일터 괴롭힘, 성희롱-에 대한 반영 필요
- 여성, 성소수자, 장애 등 다양한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고려한 자료 개발 및 안내 필요
-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및 관점의 중요성 제공 필요

EU_OSHA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

홈페이지 메인화면

Young People & OSH 메인화면



EU_OSHA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

1.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 : 작업 시작 전 위험 평가와 보호조치, 적절한 작업, 적절한 훈련과 감독 제공
- : 안전문제에 노동자 참여 장려, 18세 미만 노동자 특별 규칙 적용

2.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 : 질문, 걱정과 우려 제기, 안전하지 않은
- :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라
(직장상사, 안전담당자, 산업보건직원 또는

<위험한 물질과 취약한 그룹의 안전보건>
 취약한 개인이나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에 노출될 때마다 위험평가 단계에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취약한 그룹은 다음과 같다.

- 이주 노동자 / • Young workers / • 신입 사원
- 특정 질병이 있는 상태의 노동자
- 유지보수 노동자(여러 사이트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 포함) 및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장을 가진 기타 노동자
- 임신부 및 모유 수유 여성 / • 이차노출자

EU_OSHA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

3. 교육자와 부모를 위한 도움말

- : 어릴 때부터 위험 예방에 대한 좋은 E
- : 초등학생에게도 건강과 안전에 관한
- (Napo 클립, 교사를 위한 산업안전보
- :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

LESSONS

Target ages: 9-11 years



The following OSH education toolkits are aimed at children between **nine and eleven**. At nine, children undergo a key development phase when they should be able to start working cooperatively in groups to complete projects, start learning to work independently on multi-step projects and be introduced to basic scientific thinking and facts. Instilling a culture of risk prevention equips them with the basic skills and knowledge to keep them safe in years to come.

Napo's Hazard Hunter

4.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 : Young workers가 고용될 가능성이 높
- : 예방조치를 위한 교육자의 역할, 사

Target ages: 7-9 years



The following OSH education toolkits have been devised with children aged between **seven and nine** in mind. At this age children start moving towards abstract thinking, develop reasoning skills and shift to learning via language and logic, in addition to observation. Introducing safety and health at this age is key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s for safe and healthy habits.

Napo's Best Signs For Safety

Be Body Wise with Na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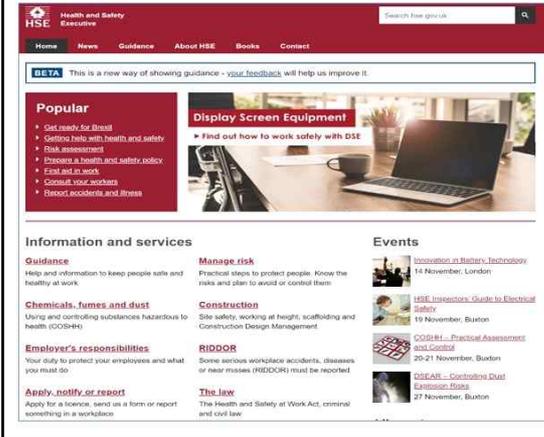
EU_OSHA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

• 의미와 한계

- 업무상 질병 발생요인 관점, 최근 증가되는 업무상 질병 반영
- 고용 전 위험성 평가 및 평가에 맞는 업무배치와 직무요구 도입
- 동료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 질병에 취약한 노동자, 성인지적 감수성, 제 3자 노출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
- 독자적인 청소년 노동자 매체 구축 필요
-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의무적 보장, 능동적인 서술 필요
- 청소년 의견 수렴 필요

영국 HSE - 'Young people at work'

홈페이지 메인화면



Young people at work 메인화면



영국 HSE - 'Young workers at work'

1. Risk

: 청소년고용을 위한 위험성 평가 고려, 고위험 작업(건설, 농업/ 제조 / 독성 물질/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의 경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

2. Training and supervision

: 젊은 노동자에 대한 수련과 감독 설명 및 안전과 작업장 위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

3. Work experience : 건강과 안전법에 따라 청소년 노동자 본인, 직업 배치 제공자, 사업주의 알아 할 사항과 의무 사항을 설명

4. Apprentices : 18세 미만의 견습생의 경우에도 다른 젊은 노동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음을 설명

영국 HSE - 'Young workers at work'

5. the law

- :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연령별 금지 직업 및 제한 직업 설명
- : 청소년 고용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내용(육체적, 심리적 능력, 맞춤형 교육 등)을 설명

6. **FAGs** :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위험평가, 심리적 능력, 유해한 노출 등)

7. Myth

- : 신화처럼 잘못 알려진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 18 세 미만은 직장이나 직장 경험을 위한 건설 현장에 고용 될 수 없음
- 직장 경험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위험 평가가 필요함

8. **Resources and useful links** : 다른 홈페이지와 자료원 안내

33

영국 HSE - 'Young workers at work'

• 의미와 한계

- 각 주체별 역할과 의무에 관한 내용 포함
- 5인 이상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청소년을 고려한 업무 배치토록 제시
-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보건에 관한 내용도 정보 제공함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도제교육 안내 포함
- 구체적인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사건/사례가 제시 필요
- 청소년에게 정보제공과 참여할 통로 개설 필요

34

핀란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홈페이지 메인화면



'Young Worker 메인화면



핀란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1) 고용계약과 연령(Employment contract and age)

-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종결 - 고용 계약은 반드시 문서(서면) 형태로 작성해야 함을 명시
- : 임금과 단체 협약 - 청소년 노동자 최저 임금을 단체협약 조항으로 들 수 있음.
- : 법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은 기본 급여에 불포함 명시

(2) 근무 시간

- : 청소년 노동자의 근무시간, 초과근무, 야간근무, 근무시간 분배, 휴식, 일일 및 주간 휴식 기간에 대한 정보

(3) 유도 교육(induction training)

- : 고용주 책임 - 청소년 노동자에게 교육, 설명, 개인별 지도, 근무 조건, 연령, 다른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 : 법에 의한 청소년 노동자에게 세심하고 충분한 지도 및 교육 필요한 것들의 목록

핀란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4)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Suitable work)

- : 청소년에게 적합한 가벼운 업무의 예시를 리스트로 제공
- : 건강 유해성 평가 위해 직업보건관리서비스에 문의(사업주)

(5) 유해 업무(Hazardous work)

- : 연령(18세 미만)에 따른 위험 작업 목록 리스트 제공
- : 청소년 노동자에게 유해한 일의 목록 제공
- : 청소년에게 특별히 해롭고 위험한 업무 목록 제공

37

핀란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의미와 한계

- 사업주에게 표준화 된 설명 요구권(고용관련) 양식 제공
- 청소년노동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공
- 노동권보다 '학습권 보장'의 중요성 및 법적 장치 마련
- 안전사고 중심의 내용 및 정보 제공의 한계
- 청소년 의견수렴의 필요
- 청소년 상담 및 구제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38

국내 청소년 안전보건 플랫폼 제언

39

청소년 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함**
 - 장기적으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 제언, 단기적으로 관련기관 내 구체적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정보제공이 중요함.
-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 제언**
 -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보장 필요
 -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과 함께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및 관점 확장도 필요
 -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와 최근 이슈-일터 괴롭힘, 감정노동, 플랫폼 노동, 초 단기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중요
 - 성인지적 감수성, 여성, 성소수자, 장애, 제3자 노출 등 다양한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자료개발과 안내 중요
 - 일하는 청소년,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의료인 등 청소년 노동인권/안전의 관련 주체로의 확장이 필요
- **학교 및 청소년기관부터 노동안전보건을 교육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

40

향후 계획

-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간담회 개최
- 지자체, 지역별 단체 및 관련 주체와의 공유 및 확산
- 청소년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위한 추가 연구
 - 청소년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필요한 정보 마련을 위한 연구
-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41

감사합니다!!

www.kilsh.or.kr



발제 2.

알권리는 살권리다 :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알 권리는 살 권리다

: 알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kyc8394@opengirok.or.kr

알 권리?





정보공개에 따른 두 가지 논란



사익 vs 알 권리	구제역·AI 가축 매몰지 공개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 파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 vs 땅값 하락·매몰지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 기피·농촌 관광객 감소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논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사고 물질·원인·장소 공개로 사고위험 대비 vs 기업 기밀 누출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줄어
사생활 vs 알 권리	어린이집 CCTV 설치법 논의	•어린이 학대 예방 위해 학부모의 알 권리 존중 vs 보육교사 실시간 감시로 인권침해 우려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로 모방 범죄 차단 vs 피의자 가족 및 지인 피해 가능성

1. 알 권리는 무엇인가?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 헌재 1989. 9. 4. 88헌마22

1. 알 권리는 무엇인가?

알 권리의 네 가지 성격

- 정보수령권 : 시민들이 정치적/사회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설명, 제공 받을 권리
- 공중의 알 권리 : 시민들이 공공적 쟁점에 대해 언론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입수할 수 있을 권리
- 정보수집권 :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이 방해 없이 취재할 수 있을 권리
- 정보공개 청구권 : 시민이 정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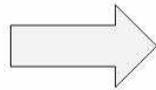


본래 표현의 자유와 연결되어 이야기

1. 알 권리는 무엇인가?

알 권리와 살 권리

- 1970년대 미국에서 암환자, 직업병 환자 급증 => 사업장 내 화학물질 영향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화학물질 규제하였지만,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울 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
- 1984년 인도 '보팔 사고' 계기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운동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권리로 확장

1. 알 권리는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 정보공개법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화학물질관리법 : 사업장의 화학물질배출량 등 공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등 공개
- 근로기준법 :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알 권리 확대

감염병관리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6.]

2. 알 권리에 대한 제약

소수자의 알 권리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소수자의 알 권리 / 정보접근 보장을 명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은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



그러나, 실질적인 제약 존재

청각 장애인



전장연
10시간

두 공중파 방송국은 재난 속보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십시오
속초-고성에 산불이 발생하고, 소중한 1분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속히 산불이 진화되길 기원합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피를 하거나 위험에 노출될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청각장애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재난주관 방송국인 KBS는 물론, MBC 등 공중파 뉴스 속보에선 수어 통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KBS, MBC는 지금 당장 화재 뉴스 속보에 수어통역을 도입하세요. 속초-고성에 사는 장애인도 재난 속보를 듣고 안전해질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 게시물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각 방송사에 수어통역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세요.
KBS 뉴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bsnews/>) 에 들어가서 언어어 게시물에 댓글로 수어통역을 빠르게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해 주세요.



아르바이트/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올리는 편의점·커피전문점

고용부가 올해 1-2월 919곳을 조사한 결과

위반 건수(사업장 수)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	595건(589곳)
임금·주휴수당 등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395(388)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	584(582)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331(329)
기타	851(610)
총계	2756(789)

자료: 고용노동부

4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 해당 사업장 중 71.4%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를 다했다면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역시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휴수당 해당 사업장 중에서 71.4%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볼텍코리아

기업정보 채용

2018 12월 : 1,000만불 수출탑 수상
 11월 : 한국산업은행 70억 투자유치(RCPS 30억+CB40억)
 04월 : 신한캐피탈 RCPS 투자 유치(10억원)
 03월 : 포스코기술투자(10억)IBK캐피탈(10억)RCPS 투자 유치
 02월 : 보통주 증자(10억원)

2019 11월 : (주)볼텍코리아 베트남 제 2공장 준공 계약완료

2020 베트남 공장 가동 신성장 동력 본격 실행
 금융감독원 지정감사인 선임, 주간사 선정

2022~2023 예비심사 청구 Book Building, 유가증권 신고서, 상장완료

잡코리아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18년- 신설>

○ '18년 사망재해 2명이상 발생 사업장(10개소)

업종 (종류별)	규모	사업장명 (현명)	사업장 소재지	사망자수 (명)
화학제품제조업	50인~99인	우성정공(주)	김천 공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51 (우성정공공장)	2
기계기구·비금속제품제조업·금속제품제조업등의금속가공업	100~299인	주식회사오스코(충청) 주(1CC합천)(충청)	강북 보령시 남구 동해안로 6202 (우촌동)	4
기계기구·비금속제품제조업·금속제품제조업등의금속가공업	50인미만	주식회사보통목요리아	강북 보령시 남구 지곡로 56 3층 (319호)	2
선박 건조및수리업	1,000인이상	현대중공업(주)	울산 동구 영미천순동로 1000 (천하동, 현대중공업)	4
건설업	50인미만	해창조개발(유) (충) 백룡수(개인업자)(충청) (도농교원학교장계속사업)	전남 영종군 교남면 일동	2
건설업	50인미만	(주)니케이건설(유) (충) 주식회사대원이앤씨(충청) 영익동50-10복합시설(신축공사)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43-11 (방이동)	2
건설업	50인미만	수출진흥주식회사 연다산동349번지(계속공사)	경기 과천시 연다산동 349번지	2
건설업	50인미만	영천삼(개인건축업자)(충) 삼진석(개인건축업자)(충) (운천동234-30다구주택신축공사)	충남 아산시 순천동 234-9번지	2
위생및음식서비스업	50인미만	새봄	충북 청주시 흥광구 오성동 구룡4길 8 103호	2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제조업	50인미만	hamanarstickkorea.co	경기 화성시 비봉면 죽지차로 186-7	2

고용노동부 사전공표정보

청 소 년



서울시교육청이 공개·비공개한 ‘스쿨 미투 처리 현황’ 관련 자료 및 비공개 이유

구분	내용	
공개	- ‘스쿨 미투’ 발생 시기 - 학교명 - 피해 사례 - 특별감사 시행 여부	
비공개	자료 없어 비공개	- 학교별 가해지목 교사 수 - 학교별 재발방지 대책 - 형사 처벌 등 수사 상황 - 민사소송 여부 등
	법률에 의해 비공개	-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 교육청 징계 결과

<자료: 정치하는 엄마들>

2. 알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한겨레21

정재) 뉴스) 사회) 사법법률

대다수 서울 학교들, 누리집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없어

애들은가라, 애들은가?

정보공개법상 청구에 나이 제한 있는데 일부 지자체 제외 된
영양부 운영되는 정보공개 포털은 만 14살 미만 가입 불가

정보공개센터, 서울 중고교 752곳 전수조사 결과
단 7곳만 누리집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실어

서울시교육청 가이드에 '정보공개' 관련 내용 빠져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2019/06/12

학생이 본인과 관련된 선도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학교서 15개월 동안 무응답은 위법

박미경 기자 mypark@lawtimes.co.kr | 입력 : 2019-06-12 오후 2:06:57

행정시건 #고등학교 #정보공개법 #회의록

학생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고도 학교가 1년 3개월 이상 공개여부에 대해 응답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나왔다. 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
므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1.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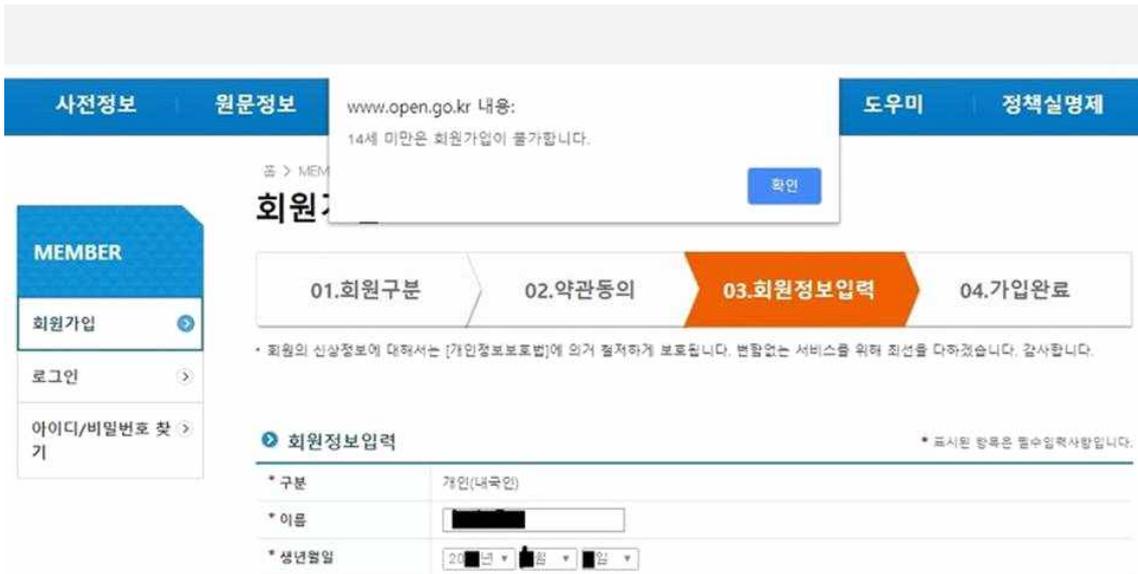
가.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나. 미성년자의 공개 청구

미성년자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
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
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학생이하] :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고교생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청구 가능



조사 대상인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752개교입니다. (2018.04.01 기준 자료)

2019년 4월 7일 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385개 중학교, 320개 고등학교, 30개 특수학교, 15개 각종학교(예술/관광/정보 등), 2개 고등기술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7개교에 불과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구로중학교, 신정여자중학교, 성암여자중학교 세 곳이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배화여자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세 곳이었습니다. 각종학교에서는 국립국악중학교가 유일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경우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 알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성인의 영역과 청소년의 영역을 구별짓고, 청소년에게는 “몰라도 돼”로 일관하는 태도
- 설령 정보공개제도를 알고 있는 청소년이라도, 이후의 불이익을 우려해 활용하지 못함
- 특히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공격’이나 ‘교권 침해’로 받아들이는 경우 있음
- ‘동료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알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청소년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중 정보공개 청구권과 알 권리

2. 알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그런거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운영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랑 어떤 정보에 대한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지 정리해놓은 것들. 그럼 우리도 좀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따질수도 있는거고 왜 이걸 학생들이 알수없는 정보고 이걸 알수 있는 정보인지...”

“선생님도 그런것을 알면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거는 매뉴얼 보니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다”

“지금 우리학교에서 물어봐서 알 수 있는건 급식레시피 뿐이야”

-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참여자 인터뷰

2. 알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저희가 성인이 됐을 때 많은게 생기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절차들? 또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성인이 된다고 해서 학습되는건 아니니까. 이런 건 학교에서 왜 안알려주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금에 대한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냥 홈텍스 하라는 대로 하는거잖아요. 말도 너무 어렵구.”

“학교에서 수능 끝나고 자소서 쓰기, 면접을 위한 메이크업 강의, 이런 걸 하는데 정말 쓸 데가 없다... 메이크업 강의 말고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4대 보험이 뭔지, 어떻게 내는지. 내년 부터 선거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누군지...”

“청소년 때는 알 것 없다고 하면서 어른 되면 갑자기 이것도 알아야 하고 저것도 알아야 한다고 하면 어찌라는건지”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참여자 인터뷰

2. 알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알 권리 주장을 위축 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들을 청소년기에 익히지 못함
- 사업주/임대인 등과 근로계약/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보의 비대칭으로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생김
- 청소년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짐

(3) 제도적 보호

- 2018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는 추후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하고자 한다.

가. 감정노동 보호법에 대한 인식

-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아는 면접참여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이 경우도 학교의 특수성과 지인의 도움으로 알게 되었을 뿐, 나머지 면접참여자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서 아예 인지가 없었으며, “감정노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번 면접조사에 참여하면서 처음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그에 대한 인식을 갖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현장에서 효용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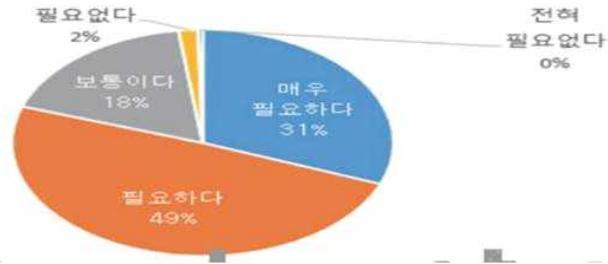
4) 노동인권교육

(1) 필요성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및 노동법률(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응답수(명)	396	631	277	21	5	1,280
비율(%)	30.9	49.3	17.7	1.6	0.4	100.0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법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매우 필요하다' 396명(30.9%), '필요하다' 631명(49.3%), '보통이다' 227명(17.7%), 교육이 필요없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다. ('필요없다' 21명(1.6%), '전혀 필요없다' 5명(0.4%))



3. 스웨덴의 경우

- 스웨덴의 교과 과정에서는 '정보 자유의 원칙Offentlighetsprincipen'을 교육. 모든 스웨덴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학습.
- 최근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공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음. 이는 SNS가 강한 영향력을 얻으면서 가짜뉴스가 유행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기사의 출처를 찾고, 신뢰도를 검증하는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그 활용법을 알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

3. 스웨덴의 경우

- 스웨덴의 경우 공공정보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달라 개인의 소득이나 공무원이 주고받은 이메일도 공공정보에 포함
-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 학교의 정보들을 사전 공개하는 문화 형성
- 익명으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제도



4. '청소년 알 권리 학교'의 교훈

-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청구 사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어려움이 많았음
- 청소년의 청구에 대한 제도적 제약
- 청소년을 위축시키는 현실적 한계
- '질문'에 대한 감각이 부재

4. '청소년 알 권리 학교'의 교훈

- 한국의 경우,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부재
- 정보공개 청구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 역시 청소년의 알 권리를 위축
- '청소년의 알 권리 침해'란 청소년의 독립적인 판단과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법과 제도, 인식과 문화를 통해 규제되는 것

4. '청소년 알 권리 학교'의 교훈

- 학교에서부터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보공개 인식 필요
: 교육기관 교/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알 권리' 교육의 필요성
: 사전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 경로 확대
- 학교를 '가르침'을 넘어서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토론 1.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1. 발제문 중 관심 있게 본 내용

- ✓ 청소년이 처한 현실과 맞닿은 이슈를 살펴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 (예: 캐나다 직업안전보건센터 'Bullying')
- ✓ 일하는 청소년 뿐 아니라 사업주, 청소년 유관 기관 종사자, 양육자, 교사, 의료인 등을 주체로 인식하는 점
- ✓ 향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단체의 역할 : 아카이브(한노보연 홈페이지에 #청소년 노동#청소년노동안전 #일하는청소년건강권 등)&가이드라인 제시

2. 일하는/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 드러내기

조건희씨가 경험한
학교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잠깐 특성화고를 다닌 적이 있어요.
납땀하는데 연기 나오니깐 몸에 안 좋지 않냐고 얘
기하니 선생님이 자기는 30년 말아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이 거기에 적응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나중에 취업하면 3~4시간 일하고 한번 쉴 텐데
지금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하기도 했어요."

- "위험한 알바와 임금 깎기, "이런 게 사회생활인가..."
인터뷰 기사 중-

√ 두려움 없이 질문할 수 있는 환경, 사회적 관계 변화 필요

#1 더 '취약한 위치'로 몰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노동환경 및 노동세계 진입 실태
-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2 특수신분 양산하는 현장실습/도제학교/산업기능요원 제도

연구 기간 : 2018년 3월~2018년 7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현장실습 대응회의(주 LG유플러스 고재현씨, 반월시화공장 서명서진 대표이사)

#3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한 기능반 훈련



#4 학교 실험실습



#5 봉사활동, 진로 체험 등등

√ 일하는/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맥락을 연결하는 문제제기 필요

- ✓ 여가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 내용 변화 필요
: 현재 '근로보호 영역' 포함, 청소년에게 노동은 유해하다는 인식 문제제기
- ✓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중 노동안전보건 영역 미흡
- ✓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유해위험 업무 내용 파악 불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시도	학교	3학년 학생수	기업재수	현장실습 학생수	표준종류 미재결	유해위험 업무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근시간과
서울	74	16,191	5,295	7,437	69	1	3	4	5	18
부산	37	7,807	1,918	2,945	1	2	-	1	1	6
대구	19	5,738	2,166	2,929	-	5	-	-	2	3
인천	28	7,148	1,814	3,031	6	4	3	1	8	18
광주	13	3,698	1,067	1,426	-	1	1	-	-	1
대전	12	3,308	1,010	1,504	-	-	-	1	-	1
울산	11	3,078	721	1,123	28	1	-	-	1	7
세종	2	237	67	112	-	-	-	-	-	-
경기	111	22,145	6,052	8,287	4	15	8	2	16	19
강원	34	3,722	1,222	1,557	4	-	-	-	2	4
충북	26	5,169	1,144	1,769	3	-	-	3	-	2
충남	37	5,442	1,498	2,260	1	4	2	2	-	-
전북	42	5,295	1,112	1,545	2	3	-	-	-	2
전남	47	5,813	2,367	2,850	11	2	2	2	2	8
경북	55	6,037	1,835	2,929	15	3	2	-	3	2
경남	35	5,579	1,772	2,494	16	2	5	1	5	3
제주	10	1,783	344	403	78	-	1	-	-	1
계	593	108,190	31,404	44,601	238	43	27	17	45	95

자료:교육부, 2017년 2월 1일 기준

√ 일하는/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관련 통계 체계화 및 구체화 필요

18세 미만인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

-근로기준시행령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40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31.]→2020.10.1. 시행 예정

√예외/제외'없이, 특례'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

3. 일하는/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알권리 확보를 위한 고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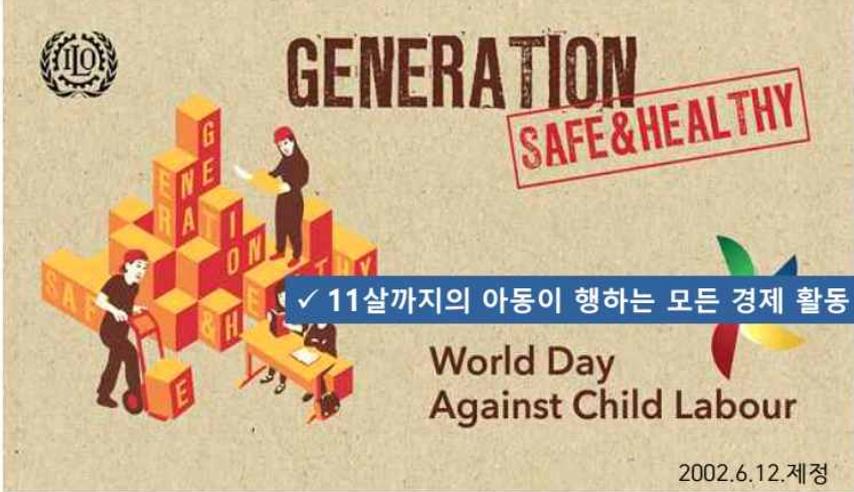
✓ 청소년 연령 기준 정비
 근로기준법(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24세 이하),
 지자체 조례 등...

·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와 체계화
 (예: 숙박업 고용 금지 vs 직업선택권 제한)

*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고용 가능유무(O=가능, X=불가능)

- (X) 관광숙박업 호텔업('18.12.31기준 1,883개소, 4성급 이상 호텔 162개소)
- (X)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호텔업(159개소)
- (○)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의 호텔 중 100실 이상 객실 보유(8개소)
- (○) 관광숙박업 중 휴양 콘도미니엄업('18.12.31기준, 228개소)

출처 : 교육부 설명자료. 2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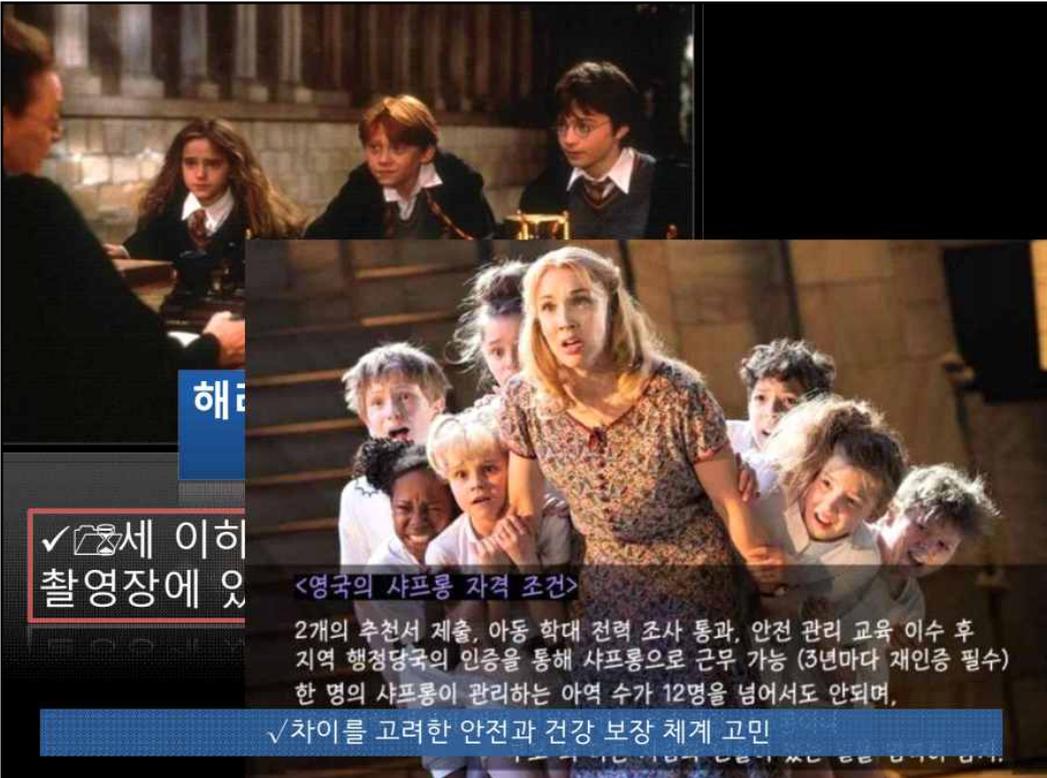


GENERATION SAFE & HEALTHY

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

2002.6.12.제정

- ✓ 11살까지의 아동이 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
- ✓ 12~14살의 아동이 행하는, 제138호 협약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가볍고 쉬운 노동'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
- ✓ 15~17살의 아동이 행하는 위험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
- ✓ 18살 미만의 아동이 행하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해

✓ **8세 이하** 촬영장에 있

<영국의 샤프롱 자격 조건>
 2개의 추천서 제출, 아동 학대 전력 조사 통과, 안전 관리 교육 이수 후 지역 행정당국의 인증을 통해 샤프롱으로 근무 가능 (3년마다 재인증 필수)
 한 명의 샤프롱이 관리하는 아역 수가 12명을 넘어서도 안되며,
 ✓ 차이를 고려한 안전과 건강 보장 체계 고민

<표 2>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17.) 주요 내용

구분	주체	주요 내용
현장실습 내실화 역량강화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기업용 매뉴얼 개발·보급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명장·기술사기능장·퇴직우수인력 등 95명을 학교에 배치, 현장실습 지원 업무 수행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우수사례 및 학교용 매뉴얼 개발·보급 산업체 현장경력 강사 650명, <u>직업자의과</u> 250명을 학교에 배치, 현장실습 지원 업무 수행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 현장실습 인프라·강사 지원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등 보호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시행 - 학교의 현장실습 사전교육의무화, - 실습시간 제한(1일 최대 8시간, 1주당 2일 휴무) - <u>안간 휴일 실습 금지</u> - 안전보건상 조치내용 구체화 - <u>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u>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중 발생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으로 포함
현장실습과 중소기업 인력양성 연계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인프라가 없는 중소기업과 한기대·폴리텍 등의 실습시설·훈련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우수 현장실습 모델과 현장실습 우수학교 등을 개발·지원 청년인턴제, 사업주 채용예정자 훈련 등을 통해 현장실습에 대한 인건비·훈련비 등을 지원 맞춤형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세액공제 제공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 협약을 통해 취업보장 맞춤형을 구성하여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실습 실시 우수중소기업 DB(3.3만개)를 고용부·교과부·중기중앙회·대한상의·경총 등과 공동으로 활용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2.4.17.),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초등 1학년 안전한 생활

“오래전(2007년)에 만들어진 교재다 보니 잘 활용하진 않아요. 현재 나와 있는 보건교과서는 안내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2020.1.16

고등학교 산업 안전 보건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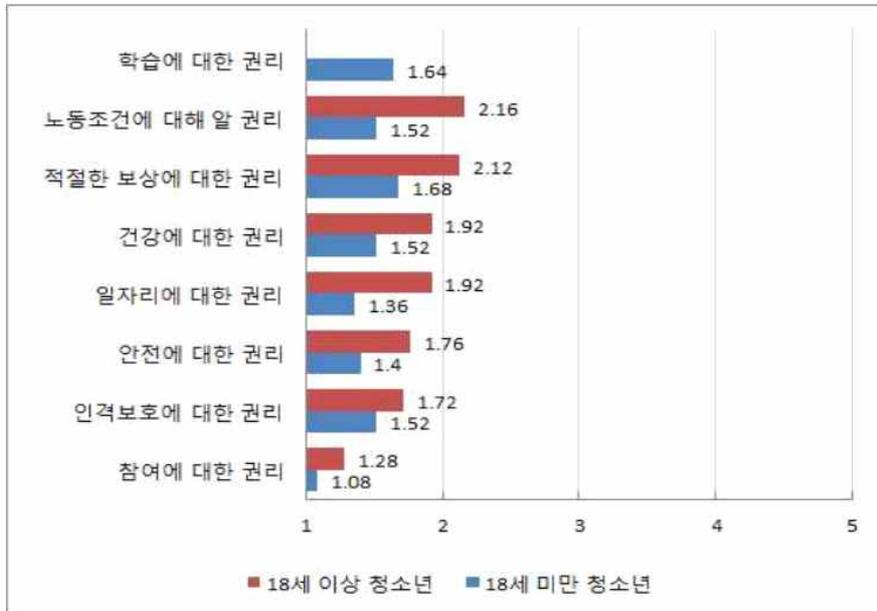
YONHAP NEWS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범교과학습 주제]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과정시기	범교과 학습 주제	주제 개수
제1차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	3
제2차	국어교육, 반공도덕교육, 건강교육 및 정서교육	3
제3차	도덕교육, 국사교육, 건강증진, 보건위생, 체력 향상, 안전교육	6
제4차	도덕, 국민정신, 언어생활, 건강과 안전, 환경교육	5
제5차	국가사회 8대 강조 사항(국민정신교육, 통일 안보교육, 안전교육, 환경교육, 진로교육, 인구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8
제6차	도덕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안전교육, 성교육	6
제7차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에너지교육,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안전교육, 진로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 및 정보윤리교육	16

교육과정시기	범교과 학습 주제	주제 개수
2007년 개정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청렴·반부패교육, 물보호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양성평등교육, 장애인 이해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대비교육, 저출산·고령화 사회대비교육, 여가활용교육, 호국·보훈교육, 효도·경로·전통윤리교육, 아동·청소년보호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농업·농촌이해교육, 지적재산권교육, 미디어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교육, 논술교육	35
2009 개정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청렴·반부패교육, 물보호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양성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사 회 대비교육, 여가활용교육, 호국·보훈교육, 효도·경로·전통윤리교육, 아동·청소년 보호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농업·농촌이해교육, 지적 재산권교육, 미디어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교육, 논술교육, 한국문화사 교육, 한자교육, 녹색교육, 독도교육	39
√교재 및 교육과정 모니터링, 산재 지식 넘어 노동안전보건감수성을 키우는 교육 필요		
	교육	

영역별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수준 평균점수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정책에 참여 보장 방안 마련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 2.

피아(‘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활동가)

청소년들의 알 권리,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피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활동가

나의 첫 임금 노동은 만 14살 때였다. 근로기준법상으론 일하는 게 불가능한 나이였지만 말이다. 처음 해 봤던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식당 서빙,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20대 초반인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숱한 노동을 해 왔다. 하지만 내가 첫 임금 노동을 하기 전이나, 그 이후에 고3 때 고등학교를 자퇴하기까지, 나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든지, 일하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일하다가 다쳤을 때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거의 알지 못한 채 일해 왔다. 학교에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직장에서도 안내받지 못했다. 아마도 내가 가졌던 일자리가 모두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만 일하는 파트타임 일자리였던 탓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은 돈이 급할 때였고, 이것저것 알아볼 기회도 없었으며, 일을 좀 하다가는 그만둘 때가 많았다.

나의 경험과 같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그리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일하면서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노동안전 등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직장을 가지고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알 권리’의 또 다른 형태 ‘교육권’

그런데 플랫폼, 웹사이트나 기타 매체를 구축하는 일만으로 얼마나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는 고민스럽다. 내가 경험담에도 썼듯이, 청소년 노동자들은 여러 형태의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며 자신의 권리나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알아볼 여유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법 제도나 권리가 존재하는지도, 유용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검색해보거나 정보를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제

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들이 플랫폼에 찾아오고 이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계획이 필요하다. ‘알 권리’의 또 다른 형태는 ‘교육권’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안전보건을 교육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발제의 제언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를 정말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학교 현장이나 다양한 공간에서의 관련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노동안전보건 등을 교육과정에서 잘 다루지 않는다. 이는 상급 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탓이 가장 크고, 노동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백안시하는 사회 문화의 탓도 있다. 또한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도 그 대상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 한정 짓고 1회적인 방식만 취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그나마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은 ‘노동인권교육활성화조례’) 고등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노동인권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들, 강사들과 잘 연계하여 플랫폼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노동인권과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교육과정 전반에 자리 잡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나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의 구축과 확장이 그런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소년을 정보의 생산자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나 매체, 정부 기관 등은 주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혹은 일터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다른 정부 조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다만 그런 목적에만 중심을 두다 보니,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공간은 존재하지 않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의 참여는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일상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단지 정보의 수용자만이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 경험을 이야기하고, 노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어떤 아르바이트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등과 같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담이나 의견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간단하게는 사례에 대한 공개적 Q&A부터 더 적극적으로 일터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장을 플랫폼

이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법이나 제도가 어떤지 등과 같은 대한 정보만이 아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알바몬 등의 사례를 보면 특정한 일터에 대한 정보, 특정 종류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하우나, 다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등의 정보를 바라는 경우도 많다. 그런 정보를 청소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산하고 명예훼손 등의 걱정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좀 더 상상해 보면, 온라인 청원 사이트와 같이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이 정책이나 법의 개선 사항, 미비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의제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냥 커뮤니티나 게시판만 열어놓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단체나 운동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나온 이야기들이나 상담 사례를 수집, 정리하여 발표하거나, 이에 반응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홍보물을 만드는 등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이런 활동에 청소년 노동에 직접 관련된 단체들이 함께하는 것도 좋으나,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조 등을 홍보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토론 3.

김태완(산업안전보건공단)

토론 4.

이순환(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